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April 15, 2019

[EU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2019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물납 증권의 저가 매수 금지대상 확대](#)

[최신 예규판례](#)

EU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최종 결정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3월 12일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2017년 12월 EU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EU의 공평과 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우리나라를 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과 함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7월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함. 후속 조치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되, 2018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

정부는 앞으로도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함.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 전면 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주소, 계좌잔액 등)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고 있었음. 금융정보자동교환에 대한 OECD 예비평가('17~'18년) 결과와 종합평가('20~'21년)기준을 반영하고, 고시 규정을 쉽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금융기관의 이해를 돋고자 기획재정부는 3월 13일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정보 교환상대국 확대: 홍콩, 터키, 이스라엘 등을 추가(78개국→ 103개국)
-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 신설: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비거주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 국세청은 동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할 예정임.

2019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월 13일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함.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체 조사건수의 축소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비중 및 간편조사 확대,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함.

2019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전 안내항목 위주의 '신고내용 확인'을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
- 전체 조사건수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2016년 55% → 2017년 58% → 2018년(잠정) 60% → 2019년(계획) 62%) 수준을 높이고,
 -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
 - 중소 성실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은 최소화하여 실시
 -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전산시스템 및 조사절차 준수 평가 비중 확대 등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교육도 지속 실시

-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 집중
 - 명의위장 유통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하여 엄정히 대응함. 범칙 혐의 포착 시 즉각 범칙조사 실시 및 세무대리인 탈세조력 처벌 강화
 -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강화
-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함.
 -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세무조사 실시
 - 2018년 7월에 강화된 절차규정(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 제반 절차를 훈령에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

또한, 국세청은 4월 4일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청에만 있던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하여 중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고 일관된 과세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향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는 등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보다 적절한 방식을 보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음.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서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안을 담고 있음.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임.

-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그래서 종전에는 지역별 구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은 경제성 (60~70%)과 정책성(30~40%)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p 축소함.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 예타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그 동안 KDI(R&D 사업 이외)와 KISTEP(R&D 사업)이 수행해 왔던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여 보다 다원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함.

물납 증권의 저가 매수 금지대상 확대

2018년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상속세 등을 물납한 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함(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물납 증권의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과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으로 정함. 이에 따라 상속 증여세로 납부한 물납증권을 친인척 등을 통해 저가로 재인수하는 조세회피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최신 세무예규판례

[국패] 주식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분율 50% 초과 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존부

아파트 시행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원고는 기타주주와 함께 아파트 시행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기타주주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6일 후 해당 지분을 포함한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원고의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5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바, 원고가 기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함. (대법2015두3591, 2019. 3. 28.)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2011두26046, 2016. 3. 10.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19. 2. 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투기업 판단 시 내국인 소유비율에 간접소유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9. 2. 12.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은 외국법인 등 외국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수혜법인에서 제외하되, 내국인(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외투기업의 모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투기업을 다시 수혜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국인의 30% 이상 소유 여부를 직접소유만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간접소유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내국인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내국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간접소유를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문언상 직접소유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료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 1. 4.)

한편, 2019. 2. 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내국인이 외국법인(외투기업의 모회사)의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내국인의 30% 이상 소유 여부 판단 시 간접소유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9. 2. 12.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Contacts

국제조세	내국세	이전가격 & 국제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금융세무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중소기업 · 스타트업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정혜원 709-0990 hyewon.choi@pwc.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ang-keun.song@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709-0692 thomas.chanu.chung@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상속증여&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이영모 3781-3140 youngmo.lee@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owell@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삼일회계법인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